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 연구진 | 이종섭 · 조경옥 · 송용호

Jeonbuk Institute



Jthink 2015-OR-03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 연구책임: 이종섭 ; 공동연구: 조경옥, 송용호. -  
- 전주 : 전북연구원, 2015  
p. ; cm. -- (Jthink ; 2015-OR-03)

ISBN 978-89-6612-136-6 93330 : 비매품

사회 복지사[社會福祉士]  
처우 개선[處遇改善]

338.15-KDC6  
353.5-DDC23

CIP2016008303

## 연구진

---

연구책임 이 중 섭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조 경 옥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송 용 호 · 전북연구원 연구원

---

연구관리 코드 : 15DA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b>I.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b> .....	<b>3</b>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	3
2.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의 중요성 .....	4
<b>II.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b> .....	<b>13</b>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	13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현황 .....	15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	18
<b>III.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b> .....	<b>23</b>
1. 조사개요 .....	23
2. 실태조사 결과(도비지원시설) .....	24
3. 실태조사 결과(지방이양시설) .....	34
4. 지역별 비교분석 .....	38
5. 국비지원시설 임금현황 조사 .....	47
<b>IV.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추계</b> .....	<b>53</b>
1. 조사개요 .....	53
2. 전문성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	62
<b>V.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b> .....	<b>71</b>
1. 기본급의 단계적 상향조정 .....	71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직급 단일화 .....	71
3.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원 .....	72
4. 각종 수당 통합 .....	73
5.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74
6.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실 운영 .....	74

## 표 목 차

〈표 I-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	4
〈표 I-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5
〈표 I-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고유업무 직책과 관리업무 직책 배열 .....	6
〈표 I-4〉 지방이양 복지사업 현황 .....	7
〈표 I-5〉 사회복지사 현황 .....	8
〈표 II-1〉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비교 .....	13
〈표 II-2〉 인건비 인상율(생활시설) .....	14
〈표 II-3〉 사회복지 종사자 직위분류 기준 .....	15
〈표 II-4〉 사회복지 시설유형 및 직급별 기본급 권고 기준-2015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	16
〈표 II-5〉 사회복지 시설유형별 관리직·기능직·사무직 기본급 권고 기준 .....	17
〈표 II-6〉 서울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19
〈표 III-1〉 조사대상 시설 현황 .....	23
〈표 III-2〉 이용시설 급여수준-기본급 비교 .....	24
〈표 III-3〉 생활시설 급여수준-기본급 비교 .....	25
〈표 III-4〉 이용시설 급여수준-총급여(수당포함) 비교 .....	25
〈표 III-5〉 생활시설 급여수준-총급여(수당포함) 비교 .....	25
〈표 III-6〉 시설유형별 급여수준 및 인력 .....	26
〈표 III-7〉 아동 및 한부모복지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26
〈표 III-8〉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인 자활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27
〈표 III-9〉 세부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3 .....	29
〈표 III-10〉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	29
〈표 III-11〉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	30
〈표 III-12〉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2 .....	30
〈표 III-13〉 세부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	31
〈표 III-14〉 종사자 규모별 시설 현황 .....	31
〈표 III-15〉 시설장 경력 .....	32
〈표 III-16〉 직원 사회복지 총 경력 .....	33



〈표Ⅲ-17〉 이용시설 급여수준-기본급 비교 .....	34
〈표Ⅲ-18〉 이용시설 급여수준-보수(수당포함) 비교 .....	34
〈표Ⅲ-19〉 이용시설 급여수준 및 인력 .....	35
〈표Ⅲ-20〉 시설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35
〈표Ⅲ-21〉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	36
〈표Ⅲ-22〉 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	36
〈표Ⅲ-23〉 종사자 규모별 시설 현황 .....	37
〈표Ⅲ-24〉 시설장 경력 .....	37
〈표Ⅲ-25〉 직원 사회복지 총 경력 .....	38
〈표Ⅲ-26〉 지역별 생활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1 .....	39
〈표Ⅲ-27〉 지역별 생활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2 .....	40
〈표Ⅲ-28〉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1 .....	40
〈표Ⅲ-29〉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2 .....	41
〈표Ⅲ-30〉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3 .....	42
〈표Ⅲ-31〉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4 .....	42
〈표Ⅲ-32〉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1 .....	44
〈표Ⅲ-33〉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2 .....	44
〈표Ⅲ-34〉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3 .....	46
〈표Ⅲ-35〉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지방이양시설 .....	47
〈표Ⅲ-36〉 전라북도 국비지원시설 급여제공 현황 .....	48
〈표Ⅳ-1〉 복지부가이드라인 대비 전북복지시설 기본급여 수준 .....	53
〈표Ⅳ-2〉 복지부가이드라인 대비 전북복지시설 총급여(수당포함) 수준 .....	54
〈표Ⅳ-3〉 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공무원 임금 인상을 적용 급여 .....	54
〈표Ⅳ-4〉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55
〈표Ⅳ-5〉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	55
〈표Ⅳ-6〉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	56
〈표Ⅳ-7〉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56
〈표Ⅳ-8〉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	56
〈표Ⅳ-9〉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	57
〈표Ⅳ-10〉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전북복지시설 기본급여 수준 .....	58
〈표Ⅳ-11〉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전북복지시설 총급여(수당포함) 수준 .....	58

〈표Ⅳ-12〉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기본급 .....	59
〈표Ⅳ-13〉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	59
〈표Ⅳ-14〉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	60
〈표Ⅳ-15〉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기본급 .....	60
〈표Ⅳ-16〉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	60
〈표Ⅳ-17〉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	61
〈표Ⅳ-18〉 전문성강화방안 설문대상 일반현황 .....	62
〈표Ⅳ-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일 - 1순위 ...	63
〈표Ⅳ-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일 - 2순위 ...	63
〈표Ⅳ-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일 - 3순위 ...	64
〈표Ⅳ-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64
〈표Ⅳ-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지원 - 1 .....	65
〈표Ⅳ-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지원 - 2 .....	65
〈표Ⅳ-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 1 .....	66
〈표Ⅳ-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 2 .....	66
〈표Ⅴ-1〉 사회복지종사자 직급 표준화 .....	72
〈표Ⅴ-2〉 직급기준 통일방안 .....	72
〈표Ⅴ-3〉 세부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	73
〈표Ⅴ-4〉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통합(안) .....	73

# 제 1 장

##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2.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의 중요성



# 제 1 장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

##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일반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가와 민간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돌봄, 교육, 재활 및 상담, 여가 및 문화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 사회복지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3조 4)
  -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되고 이중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다름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추진되는 정책인데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더하여 민간부문을 제공주체로 포함하고 있음

〈표 1-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구분	정 의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자료 : 사회보장기본법

## 2.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의 중요성

### 1)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 및 정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 정의할 수 있음
-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의됨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자로 정의됨

- 사회복지시설은 유형별로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시설의 거주여부에 따라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거주여부에 따라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분류되고 있고, 각각의 복지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의 인력이 규정되고 있음

〈표 1-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대상	형태	시설종류	관련법령
노인	생활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생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이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상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영유아보육법
정신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법
	이용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

〈표 1-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고유업무 직책과 관리업무 직책 배열

시설 유형	이용시설				주거시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지역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대표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고유업무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사 프로그램강사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재활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프로그램강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방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업무	시설장 주임교사 조리원 운전원 간호사 시설관리원	관장 사무국장 부장 조리원 운전원	관장 사무국장 부장 조리원 시설관리원	관장 부장 총무부원 조리원 청소원	원장 사무국장 조리원 청소년 시설관리원	원장 사무국장 조리원 청소년 시설관리원	원장 사무국장 조리원 청소년 시설관리원

신혜중(2014). 아산시·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직책은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가령, 이용시설은 주로 운영책임자로 관장, 중간관리자로 사무국장 이나 부장 그리고 고유업무로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편재되어 있음
- 거주시설은 관리자로 원장과 중간관리자로 사무국장 그리고 고유업무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으로 편재

##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의미와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비단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선에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지는 국가의 정책적 의무에서 발현되기보다는 자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혜적 의미가 강해 사회복지종사자도 전문가로서의 인식보다는 봉사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 사회복지의 책임 혹은 주체로서 국가의 의무가 강할수록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전문가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의 의무보다는 민간의 책임이나 단순한 봉사의 의무로 이해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도 단순한 봉사자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표 1-4〉 지방이양 복지사업 현황

산정항목		사업내용
경상적 수요	노인 복지비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 운영</li> <li>• 경로식당 무료급식</li> <li>• 노인건강진단</li> <li>• 치매상담센터 운영</li> <li>•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li> </ul>
	장애인 복지비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관 운영</li> <l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li> <li>•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li> <li>•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li> <li>•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li> <li>• 의료재활시설 운영</li> <li>• 공동생활가정 운영</li> <li>•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li> <li>•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 수술</li> </ul>
	아동 복지비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시설 운영</li> <li>• 아동급식</li> <li>• 가정위탁양육 지원</li> <li>• 소년소녀가장 지원</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li> </ul>
	기타 복지비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li> <l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li> <li>•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li> <li>• 노숙자 보호</li> <li>• 쪽방지원자</li> </ul>
비경상적 수요	특정 수요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li> <li>•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li> <li>• 노인복지회관 운영</li> <li>• 노인일거리마련사업</li> <li>• 경로당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li> <li>•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운영</li> <li>• 장애인특별운송사업</li> <li>• 장애인 체육관 운영</li> <li>•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li> <li>•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li> <li>•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li> <li>•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연기관 운영</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li> <li>• 입양기관 운영</li> <li>• 퇴소아동 자립정착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li> <li>• 사회복지시설 운영</li> <li>•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li> <li>•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시설운영(노인양로, 노인장기요양보 험사업)</li> <li>•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li> <li>• 노인복지회관 신축</li> <li>• 정신요양시설 운영</li> <li>•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장애인생활시설)</li> <li>• 근로자종합복지관</li> <li>•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li> </ul>

- 특히,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국고보조시설 인건비보다 낮아 차별성이 나타나면서 지방이양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저하 및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하락 우려
-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과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품질 저하 초래

-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의 55.0%가 보수수준이 맡은 일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걱정하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
- 직업만족도에서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사회복지종사자의 30.7%가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직사유로는 보수가 낮아서 30.7%)

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 인용

〈표 1-5〉 사회복지사 현황

구분	총계			1급			2급			3급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3	637,617	167,550	470,067	110,518	27,392	83,126	514,344	136,670	377,674	12,755	3,488	9,267
서울	147,753	38,596	109,157	41,411	9,863	31,548	95,158	25,775	69,383	11,184	2,958	8,226
부산	41,360	10,190	31,170	7,251	1,928	5,323	33,718	8,101	25,617	391	161	230
대구	35,964	9,631	26,333	5,461	1,508	3,953	30,299	8,071	22,228	204	52	152
인천	18,853	4,824	14,029	3,364	781	2,583	15,451	4,037	11,414	38	6	32
광주	40,328	10,240	30,088	4,671	1,020	3,651	35,518	9,186	26,332	139	34	105
대전	27,213	7,810	19,403	4,596	1,246	3,350	22,520	6,526	15,994	97	38	59
울산	8,342	1,736	6,606	941	189	752	7,383	1,540	5,843	18	7	11
세종	-	-	-	-	-	-	-	-	-	-	-	-
경기	82,072	21,011	61,061	11,902	3,260	8,642	70,028	17,707	52,321	142	44	98
강원	19,083	5,744	13,339	2,548	718	1,830	16,492	5,010	11,482	43	16	27
충북	25,579	6,312	19,267	3,692	910	2,782	21,790	5,369	16,421	97	33	64
충남	22,428	5,738	16,690	3,890	895	2,995	18,434	4,801	13,633	104	42	62
전북	34,894	9,678	25,216	5,648	1,467	4,181	29,121	8,175	20,946	125	36	89
전남	42,419	11,297	31,122	3,858	884	2,974	38,528	10,401	28,127	33	12	21
경북	47,888	13,179	34,709	6,018	1,649	4,369	41,805	11,512	30,293	65	18	47
경남	33,596	8,714	24,882	4,300	819	3,481	29,233	7,867	21,366	63	28	35
제주	9,845	2,850	6,995	967	255	712	8,866	2,592	6,274	12	3	9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 한편, 사회복지사는 2013년 기준 63.7만명이고, 이중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사는 3.5만명 수준임
  -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는 남자 9.6천명, 여자 2.5만명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중 여성이 72.3%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시설의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모두 포함됨



## 제 2 장

#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현황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 제 2 장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현황을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해 보면, 원장 1호봉은 89.18%수준, 사무국장 1호봉 85.78%, 과장 및 생활복지사 1호봉 9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최소 85.78%에서 최대 92.38% 수준임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수준은 16개 시도 중 10순위 밖에 위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충족하고 있는 곳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총 4개 지역임

〈표 II-1〉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비교

광역 시도	원장_1호봉		사무국장_1호봉		과장 및 생활복지사_1호봉		생활지도원 (선임) 1호봉		생활지도원 (직원) 1호봉		기능직_1호봉		관리인_1호봉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복지부	100	순위	100%	순위	100	순위	100	순위	100	순위	100	순위	100%	순위
강원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충남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전남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경북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1
세종	93.09	6	93.03	6	95.20	5	95.33	5	95.50	5	95.53	5	95.49	5
울산	93.09	6	93.03	6	95.20	5	95.33	5	95.50	5	95.53	5	95.49	5
대전	95.00	5	95.00	5	95.00	7	95.00	8	95.00	8	95.00	8	95.00	8
경기	92.80	8	92.48	8	94.95	8	95.08	7	95.24	7	95.31	7	95.22	7
경남	91.11	9	91.00	9	93.15	10	93.28	10	93.44	10	93.48	9	93.44	9
충북	91.01	10	87.54	10	93.99	9	94.09	9	94.34	9	89.44	14	92.55	10
광주	89.18	11	85.78	12	91.95	11	92.10	11	92.34	11	92.38	10	92.34	11
전북	89.18	11	85.78	12	91.95	11	89.30	13	92.34	11	92.38	10	92.34	11
부산	89.18	11	85.78	12	91.95	11	89.30	13	92.34	11	92.38	10	92.34	11
대구	88.02	14	86.22	11	90.45	14	90.54	12	90.80	14	90.76	13	90.77	15
인천	84.78	15	85.46	15	89.55	15	87.43	15	87.19	15	88.20	15	91.25	14
서울	60.77	16	57.41	16	59.46	16	56.38	16	58.30	16	58.06	16	60.90	16

주. 지역별 종사자 급여현황은 기본급만 비교한 것으로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기준연도 : 2013년 9월 기준

자료 : 김성주 의원실(2014)

〈표 II-2〉 인건비 인상율(생활시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소계
복지부 권고안	6%	6.5%	7%	연봉제 전환(4.5%)	6.4%	6.4%	5.9%	42.7%	
시도 평균	5.8%	6.4%	4.9%	1.3%	2.8%	4.0%	5.0%	4.4%	34.6%
서울특별시	5.0%	5.0%	6.0%	0.0%	0.0%	8.0%	5.7%	5.9%	35.6%
부산광역시	6.0%	6.5%	3.5%	0.0%	0.0%	5.0%	6.4%	3.0%	30.4%
대구광역시	6.0%	6.5%	3.5%	3.0%	5.0%	0.0%	3.0%	2.0%	29.0%
인천광역시	3.7%	6.5%	5.0%	5.0%	5.0%	0.0%	0.0%	1.0%	26.2%
광주광역시	6.0%	6.5%	1.5%	0.0%	9.0%	0.0%	1.7%	0.0%	24.7%
대전광역시	6.0%	6.5%	7.0%	0.0%	4.5%	0.0%	6.1%	5.9%	36.0%
울산광역시	6.0%	6.5%	7.0%	0.0%	5.0%	0.0%	3.5%	4.3%	32.3%
경기도	6.0%	6.5%	3.5%	0.0%	0.0%	8.0%	6.4%	5.9%	36.3%
강원도	6.4%	6.5%	7.0%	3.0%	2.0%	6.4%	6.4%	5.9%	43.6%
충청북도	6.0%	6.5%	5.0%	0.0%	3.0%	3.5%	6.4%	6.4%	36.8%
충청남도	6.0%	6.5%	7.0%	0.0%	0.0%	4.5%	9.6%	9.9%	42.7%
전라북도	5.0%	6.5%	5.0%	3.0%	3.0%	3.0%	3.0%	6.0%	34.5%
전라남도	6.0%	6.5%	3.5%	0.0%	8.0%	6.4%	6.4%	5.9%	42.7%
경상북도	6.0%	6.5%	7.0%	3.0%	1.5%	6.4%	6.4%	5.9%	42.7%
경상남도	5.0%	6.5%	3.5%	3.0%	0.0%	5.0%	6.1%	3.0%	32.1%
제주도	6.0%	6.5%	3.5%	0.0%	0.0%	8.0%	3.5%	6%	38.4%

-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 시설 기준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42.7%의 인상율 권고, 전북 34.5% 인상
  -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율 권고기준을 충족시킨 지역은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충청남도이고, 가장 근접한 인상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도임



##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현황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편차로 인한 사기저하 등의 문제로 2009년부터 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동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가능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후 해당지자체로 하여금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 마련이 가능하다는 적용원칙 설정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을 조정하되 보수수준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표 II-3〉 사회복지 종사자 직위분류 기준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안전관리원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 또한 보건복지부는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의 분류를 예시하고 있음
  - 예시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직위는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및 관리직으로 분류

〈표 II-4〉 사회복지 시설유형 및 직급별 기본급 권고 기준-2015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구분	해당 직급					
	원장	사무국장	-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이용시설 (사회/노인)	관장	부장	-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용시설 (장애인)	관장	1급	사무국장	2급	3급	4급
1호봉	2,373	2,111	2,203	1,876	1,797	1,639
2호봉	2,417	2,159	2,246	1,905	1,851	1,690
3호봉	2,466	2,208	2,295	2,029	1,907	1,743
4호봉	2,519	2,343	2,435	2,082	1,943	1,799
5호봉	2,630(생활)	2,386	2,482	2,135	1,998	1,853
	2,661(이용)					
10호봉	3,206	2,894	3,005	2,625	2,436	2,225
15호봉	3,646	3,307	3,425	2,999	2,728	2,496
20호봉	3,964	3,610	3,733	3,281	2,992	2,749
25호봉	4,203	3,843	3,965	3,502	3,202	2,951
30호봉	4,368	4,009	4,130	3,660	3,356	3,093
31호봉	-	4,035	4,144	3,686	3,383	3,119

※ 장애인 이용시설의 경우 1급의 직위가 생활시설의 사무국장, 이용시설(사회, 노인)의 부장직위와 동등하며 사무국장의 기본급 지급기준이 다른 시설과는 달리 추가제시 되어 있음

- 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을 10호봉 기준으로 보면, 원장은 기본급만 3,206천원, 사무국장은 2,894천원, 사무국장(이용시설) 3,005천원 등임
  - 사회복지사는 선임급의 경우 2,436천원, 일반 사회복지사는 2,225천원 임

〈표II-5〉 사회복지 시설유형별 관리직기능직(노무, 운전기사, 조리원 등)사무직(서무, 전산 등)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천원/월)

호봉	생활시설		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기능직				이용시설(사회, 노인) 사무직			
	관리직	기능직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501	1,400	1,631	1,557	1,485	1,408	1,704	1,665	1,622	1,576
2호봉	1,561	1,464	1,681	1,614	1,546	1,470	1,756	1,729	1,680	1,643
3호봉	1,617	1,517	1,729	1,665	1,593	1,515	1,806	1,777	1,733	1,684
4호봉	1,668	1,569	1,781	1,716	1,644	1,567	1,857	1,830	1,779	1,740
5호봉	1,719	1,623	1,829	1,770	1,698	1,620	1,907	1,879	1,848	1,786
6호봉	1,856	1,759	1,964	1,872	1,797	1,719	2,043	1,992	1,941	1,891
7호봉	1,895	1,796	2,041	1,922	1,851	1,773	2,121	2,045	1,990	1,946
8호봉	1,946	1,849	2,139	1,999	1,922	1,839	2,218	2,116	2,066	2,018
9호봉	1,980	1,886	2,226	2,076	1,990	1,910	2,308	2,184	2,133	2,100
10호봉	2,056	1,964	2,314	2,145	2,074	1,994	2,396	2,261	2,207	2,163
11호봉	2,123	2,032	2,389	2,225	2,139	2,045	2,474	2,332	2,264	2,239
12호봉	2,195	2,103	2,469	2,313	2,234	2,123	2,550	2,434	2,357	2,306
13호봉	2,237	2,146	2,509	2,350	2,271	2,164	2,590	2,474	2,400	2,350
14호봉	2,283	2,195	2,557	2,401	2,320	2,213	2,640	2,521	2,445	2,391
15호봉	2,326	2,243	2,599	2,446	2,359	2,252	2,683	2,566	2,489	2,439
16호봉	2,385	2,300	2,648	2,490	2,405	2,296	2,735	2,612	2,528	2,482
17호봉	2,430	2,350	2,687	2,531	2,450	2,341	2,786	2,664	2,570	2,521
18호봉	2,474	2,395	2,739	2,574	2,495	2,407	2,837	2,712	2,619	2,590
19호봉	2,522	2,441	2,778	2,624	2,538	2,454	2,878	2,751	2,662	2,640
20호봉	2,568	2,491	2,829	2,667	2,579	2,493	2,928	2,799	2,708	2,686
21호봉	2,634	2,562	2,874	2,709	2,628	2,542	2,972	2,843	2,754	2,732
22호봉	2,680	2,604	2,923	2,759	2,674	2,563	3,022	2,892	2,798	2,750
23호봉	2,724	2,652	2,967	2,803	2,717	2,608	3,068	2,936	2,847	2,808
24호봉	2,769	2,702	3,013	2,850	2,765	2,655	3,118	2,981	2,894	2,841
25호봉	2,819	2,750	3,069	2,898	2,818	2,706	3,169	3,033	2,942	2,889
26호봉	2,860	2,796	3,121	2,948	2,862	2,721	3,202	3,064	2,993	2,903
27호봉	2,906	2,843	3,169	2,994	2,910	2,769	3,254	3,115	3,040	2,949
28호봉	2,917	2,857	3,220	3,010	2,928	2,785	3,302	3,131	3,058	2,967
29호봉	2,964	2,903	3,269	3,027	2,941	2,800	3,352	3,143	3,070	2,981
30호봉	2,974	2,919	3,315	3,071	2,987	2,848	3,399	3,188	3,114	3,028
31호봉	3,005	2,949	3,349	3,103	3,019	2,875	3,434	3,222	3,147	3,059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중 관리직과 기능직 및 사무직을 비교해 보면, 10호봉 기준 생활시설의 관리직은 2,056천원, 기능직은 1,964천원임
  - 이용시설의 관리직은 기능직과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이용시설 기능직 1급의 경우 2,314천원, 사무직 1급은 2,396천원으로 설정

###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 서울시는 2012년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의 제정 이후 종사자의 급여수준의 목표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준으로 설정 단계별 지원 방안을 설정 후 추진
-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는 2014년에 이미 종사자 평균급여가 공무원 대비 95% 수준을 달성하였고 이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95%를 지급하는 계획으로 급여 인상계획을 수립
- 서울시는 2015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각각 전년 대비 3.36%, 4.18%로 인상할 계획을 수립
- 특히 서울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이 관장 등 상급직위자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는데 반해 하급자는 높은 상박하후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간의 인상율을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급여 95% 이상 수준의 하위직(5급) : 이용시설 2.8%, 거주시설 3.25% 인상</li> <li>● 공무원 급여 95% 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76%~6.73%, 거주시설 6.86%~8.79% 인상</li> </ul> <p>[자료 : 서울시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안)]</p>
--

- 또한 서울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간 급여 편차도 보정하기 위해 생활시설의 급여인상율을 이용시설보다도 높게 책정
-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수준의 기준선을 공무원 급여로 설정함에 따라 공무원과의 비교직급을 설정하여 달성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시설규모 및 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급과 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 시설장(관장, 원장)은 1급~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으로 적용

[자료 : 서울시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수준의 목표는 공무원수준까지로 설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비교직급을 설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급에서 7급까지로 범주화하고 근무경력에 따라 관장은 1급에서 3급, 부장은 2급에서 3급, 과장은 3급, 대리 4급,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은 5급으로 직급 설정

〈표II-6〉 서울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천원/월)

호봉	이용시설							생활시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1,774	1,488	1,302	1,156	1,129	1,019		1,499	1,388	1,308	1,215	1,083	1,124
2호봉		1,804	1,514	1,324	1,183	1,161	1,048		1,540	1,426	1,342	1,242	1,114	1,154
3호봉		1,835	1,548	1,359	1,214	1,183	1,077		1,581	1,465	1,375	1,272	1,144	1,183
4호봉		1,865	1,579	1,380	1,236	1,214	1,109		1,622	1,504	1,409	1,301	1,175	1,212
5호봉		1,891	1,609	1,412	1,267	1,242	1,142		1,663	1,542	1,443	1,329	1,202	1,241
6호봉		1,974	1,685	1,491	1,347	1,316	1,214		1,737	1,614	1,509	1,390	1,264	1,303
7호봉		2,016	1,729	1,538	1,390	1,360	1,259		1,779	1,653	1,543	1,419	1,294	1,331
8호봉		2,062	1,775	1,575	1,427	1,404	1,299		1,819	1,691	1,577	1,447	1,325	1,360
9호봉		2,101	1,821	1,620	1,472	1,450	1,340		1,861	1,729	1,610	1,477	1,355	1,389
10호봉		2,149	1,865	1,657	1,508	1,486	1,390		1,902	1,767	1,644	1,506	1,385	1,418
11호봉		2,191	1,907	1,707	1,557	1,530	1,427		1,943	1,805	1,677	1,534	1,415	1,446
12호봉		2,226	1,936	1,729	1,582	1,561	1,458		1,985	1,844	1,711	1,561	1,446	1,477

호봉	이용시설							생활시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3호봉		2,255	1,964	1,763	1,614	1,589	1,483		2,026	1,884	1,746	1,592	1,477	1,507
14호봉		2,289	1,999	1,971	1,640	1,618	1,517		2,071	1,924	1,782	1,622	1,509	1,536
15호봉		2,319	2,028	1,820	1,669	1,649	1,544		2,113	1,963	1,816	1,653	1,541	1,566
16호봉	2,461	2,351	2,057	1,850	1,700	1,679	1,575	2,362	2,155	2,003	1,852	1,683	1,573	1,597
17호봉	2,489	2,380	2,089	1,878	1,728	1,704	1,606	2,405	2,197	2,044	1,886	1,712	1,604	1,626
18호봉	2,518	2,414	2,119	1,908	1,755	1,734	637	2,447	2,240	2,083	1,922	1,742	1,634	1,656
19호봉	2,552	2,443	2,153	1,940	1,787	1,765	1,666	2,490	2,283	2,123	1,957	1,772	1,666	1,686
20호봉	2,580	2,476	2,181	1,969	1,816	1,795	1,694	2,532	2,325	2,162	1,992	1,802	1,697	1,716
21호봉	2,613	2,505	2,213	2,000	1,846	1,826	1,726	2,577	2,370	2,202	2,027	1,833	1,729	1,746
22호봉	2,645	2,539	2,246	2,031	1,878	1,857	1,758	2,619	2,411	2,241	2,060	1,860	1,761	1,775
23호봉	2,681	2,570	2,279	2,061	1,907	1,886	1,789	2,662	2,453	2,281	2,096	1,890	1,791	1,806
24호봉	2,709	2,606	2,310	2,093	1,939	1,918	1,824	2,704	2,496	2,321	2,130	1,920	1,821	1,835
25호봉	2,742	2,641	2,344	2,118	1,966	1,947	1,853	2,747	2,538	2,360	2,166	1,950	1,853	1,865
26호봉	2,775	2,675	2,377	2,151	1,996	1,980	1,887	2,790	2,581	2,400	2,201	1,980	1,885	1,896
27호봉	2,809	2,709	2,410	2,183	2,028	2,011	1,919	2,833	2,623	2,442	2,236	2,010	1,917	1,925
28호봉	2,843	2,743	2,444	2,221	2,069	2,043	1,951	2,875	2,665	2,481	2,271	2,040	1,948	1,955
29호봉	2,877	2,777	2,475	2,253	2,100	2,076	1,983	2,919	2,709	2,521	2,307	2,071	1,979	1,985
30호봉	2,908	2,811	2,509	2,287	2,132	2,107	2,014	2,961	2,751	2,561	2,342	2,101	2,010	2,015
31호봉		2,845	2,542	2,321	2,166	2,139	2,047		2,794	2,601	2,377	2,131	2,041	2,045

## 제 3 장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실태조사 결과(도비지원시설)
3. 실태조사 결과(지방이양시설)
4. 지역별 비교분석
5. 국비지원시설 임금현황 조사





# 제 3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 1. 조사개요1)

-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는 아동시설 14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개소, 장애인복지관 4개소, 사회복지귀시설 10개소, 노숙인 자활시설 1개소 등 과 지양이양 시설 20개소임
- ※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실태조사는 시설급여의 실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위해 2014년 결산서 기준으로 통일하여 조사 실시

〈표Ⅲ-1〉 조사대상 시설 현황

구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시설유형	시설명칭	시설유형	시설명칭	
도비 지원 시설	아동복지시설 14개소	전주영아원      삼성보육원 호성보육원      모세스영아원 일맥원      삼성애육원 구세군군산후생원	장애인복지관 4개소	김제장애인복지관 정수장애인복지관 부안장애인복지관 무주장애인복지관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      정읍애육원 선덕보육원      고창행복원 요엘원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10개소	전북장애인부모회부설주간보호센터 전북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주베다니주간보호센터 꿈마을주간보호센터 해찬나래주간보호센터 희망드림주간보호센터 군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구세군군산목양원주간보호시설 군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마음주간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5개소	원광모자원      신광모자원 성애모자원      이산모자원 신광모자자립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11개소		전북심부름센터      전주심부름센터 군산심부름센터      익산심부름센터 정읍심부름센터      남원심부름센터 김제심부름센터      완주심부름센터 무주심부름센터      장수심부름센터 순창심부름센터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마음건강복지관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희망의쉼터 희망의그루터기 성일유엔아이 소망의집 동행			수화통역센터 6개소
	노숙인자활 시설 1개소	전주희망의쉼터	점자도서관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마음건강일터와나눔터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실태조사는 급여현황조사의 설문문항은 전북연구원이 개발하고, 급여실태에 대한 조사는 전라북도가 직능단체별 협회를 통해 개별기관 급여현황조사 실시

구분	이용시설			
	시설유형	시설명칭		
지방 이양 시설	사회복지관 6개소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정읍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군산사회복지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14개소	무주노인복지관 금암노인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정읍노인복지관	임실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정읍북부노인복지관	고창노인복지관 남원노인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군산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 장수노인복지관		

## 2. 실태조사 결과(도비지원시설)

- 시설유형에 따라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 수준으로는 이용시설 관장은 9호봉 84.9%에서 22호봉 95.9%까지의 준수율을 보였고 생활시설 원장은 5호봉 80.9%에서 10호봉 85.7%까지의 준수율을 나타냄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모두 관장·원장 및 과장 등의 상위직급보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의 급여준수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Ⅲ-2〉 이용시설 급여수준-기본급 비교

(단위 : 천원/월, %)

구분	관장			구분	과장			구분	사회복지사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9호봉	2,208	2,601	84.9	14호봉	2,358	2,826	83.4	5호봉	1,639	1,821	90.0
15호봉	3,083	3,513	87.8	15호봉	2,426	2,889	84.0	10호봉	1,982	2,164	91.6
16호봉	3,167	3,581	88.4					13호봉	2,130	2,292	92.9
19호봉	3,201	3,765	85.0					17호봉	2,256	2,507	90.0
22호봉	3,757	3,919	95.9								
23호봉	3,592	3,965	90.6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1) 관장 9호봉의 경우 장애인심부름센터 조사 결과이며, 장애인심부름센터 관장은 장애인복지관 직원 일반직 1급의 급여기준을 적용

〈표Ⅲ-3〉 생활시설 급여수준-기본급 비교

(단위 : 천원/월, %)

구분	원장			과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5호봉	2,051	2,534	80.9	1,697	2,047	82.9	1,693	1,785	94.8
10호봉	2,646	3,089	85.7	2,215	2,529	87.6	1,874	2,098	89.3
15호봉	3,007	3,513	85.6	2,385	2,889	82.6	2,082	2,404	86.6
20호봉	3,242	3,819	84.9	2,802	3,161	88.6	2,451	2,647	92.6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사회복지사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최소 91.6%~최대 96.0% 수준이고, 과장의 경우 86.0%~87.6% 수준임

〈표Ⅲ-4〉 이용시설 급여수준-총급여(수당포함)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관장			구분	과장			구분	사회복지사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9호봉	2,391	2,861	83.6	14호봉	2,724	3,109	87.6	5호봉	1,835	2,003	91.6
15호봉	3,540	3,864	91.6	15호봉	2,734	3,178	86.0	10호봉	2,284	2,380	96.0
16호봉	3,429	3,939	87.1					13호봉	2,310	2,521	91.6
19호봉	3,467	4,142	83.7					17호봉	2,594	2,758	94.1
22호봉	4,252	4,311	98.6								
23호봉	4,006	4,362	91.8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수당포함 분석에서 전북은 정근수당, 직책수당,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지원, 복지수당, 체력단련비, 종사자처우개선 등 총 11종 포함, 복지부는 명절휴가비 1종 포함

1) 관장 9호봉의 경우 장애인심부름센터 조사 결과이며, 장애인심부름센터 관장은 장애인복지관 직원 일반직 1급의 급여기준을 적용

〈표Ⅲ-5〉 생활시설 급여수준-총급여(수당포함)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원장			과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5호봉	2,051	2,787	73.6	1,834	2,252	81.4	1,847	1,964	94.0
10호봉	3,016	3,398	88.8	2,502	2,782	89.9	2,110	2,308	91.4
15호봉	3,335	3,864	86.8	2,673	3,178	84.1	2,394	2,644	90.5
20호봉	3,603	4,201	85.8	3,179	3,477	91.4	2,655	2,912	91.2

\*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수당포함 분석에서 전북은 정근수당, 직책수당,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지원, 복지수당, 체력단련비, 종사자처우개선 등 총 11종 포함, 복지부는 명절휴가비 1종 포함

- 이용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 9호봉에 연간 24,492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당을 포함할 경우 연 27,396천원을 받고 있음
- 생활시설은 평균 10호봉으로 연 24,852천원을 기본급여로 받고 있으며, 수당을 포함한 경우 27,792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평균급여를 비교해 보면, 부장 13호봉의 연간평균급여는 30,504천원, 생활시설은 29,220천원으로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는 다소 급여 수준이 높음

〈표Ⅲ-6〉 시설유형별 급여수준 및 인력

구분	직위	종사자수(n)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 (천원)	연간총급여 (천원)
이용시설 급여기준	관장	16	12	31,560	35,052
	부장	11	13	30,504	34,164
	과장	9	13	25,056	27,960
	팀장(선임사회복지사)	26	9	23,508	26,388
	사회복지사	61	6	21,876	24,504
	소계	123	9	24,492	27,396
생활시설 급여기준	원장	28	20	38,460	43,380
	사무국장	39	13	29,220	32,436
	과장/생활복지사	63	9	24,864	27,732
	생활지도원	201	8	22,116	24,732
	소계	331	10	24,852	27,792

〈표Ⅲ-7〉 아동 및 한부모복지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단위 : 명, 천원)

직위	아동양육시설(14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5개소)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원장	14	23	40,071	47,580	84.2	4	18	36,295	44,484	81.6
사무국장	14	17	33,065	39,744	83.2	5	12	29,951	35,628	84.1
과장/생활복지사	30	11	25,926	31,428	82.5	5	7	22,916	26,880	85.3
생활지도원	173	9	22,240	24,264	91.7	4	8	21,327	24,048	88.7
합계	231	10	24,456	27,070	90.3	18	11	27,490	32,667	84.2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본급 비교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원장의 평균 호봉은 23호봉이었고, 평균급여는 40,071천원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4.2%를 충족하고 있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평균 호봉 18호봉 기준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81.6%로 나타남

〈표 Ⅲ-8〉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인 자활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단위 : 명, 천원)

직위	사회복지생활시설(10개소)					노숙인자활시설(1개소)				
	종사자 수(명)	평균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종사자 수(명)	평균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원장	9	15	37,076	42,156	87.9	1	11	37,056	38,364	96.6
사무국장	20	11	26,345	34,656	76.0	-	-	-	-	-
과장/생활복지사	27	7	23,807	26,880	88.6	1	12	31,188	35,628	87.5
생활지도원	23	7	21,224	23,280	91.2	1	8	23,628	24,048	98.3
합계	79	9	25,209	29,273	86.1	3	10	30,624	30,864	99.2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이용시설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은 평균 11호봉에 연 25,808천원,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은 평균 6호봉에 24,071천원의 수준으로 기본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시설장, 부장 등 높은 직급의 급여가 조사되지 않아 다른 시설에 비해 평균급여가 적게 나타남

〈표 III-9〉 세부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3

(단위 : 명/천원)

직위	장애인복지관(4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9개소)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급여	준수율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급여	준수율
관장	4	21	42,244	46,452	90.9	2	11	34,059	38,364	88.8
부장	5	19	37,177	41,112	90.4	1	14	27,042	37,392	72.3
과장	7	12	24,698	32,304	76.5	1	15	27,636	34,668	79.7
선임사회복지사	16	9	23,202	27,432	84.6	3	8	22,602	26,628	84.9
사회복지사	17	7	21,507	23,520	91.4	22	5	23,066	21,852	105.6
합계	49	11	25,808	29,722	86.8	29	6	24,071	23,851	100.9
직위	장애인심부름센터(10개소)					장애인수화통역센터(6개소)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급여	준수율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급여	준수율
관장	8	4	23,237	26,076	89.1					
부장	1	6	21,102	25,560	82.6					
과장	1	11	24,966	27,216	91.7					
선임사회복지사	1	10	23,517	26,412	89.0	2	10	23,055	28,164	81.9
사회복지사	14	9	22,113	24,504	90.2	6	4	18,594	21,216	87.6
합계	25	7	22,603	25,234	89.6	8	6	19,709	23,247	84.8
직위	사회복귀이용시설(2)					점자도서관(1개소)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급여	준수율	종사자 수(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연간 복지부급여	준수율
관장	2	23	40,974	47,580	86.1					
부장	3	6	25,108	28,440	88.3	1	15	26,244	38,232	68.6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4	10	25,632	28,164	91.0					
사회복지사	2	6	20,204	22,704	89.0					
합계	11	10	27,292	30,827	88.5	1	15	26,244	38,232	68.6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표Ⅲ-10〉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단위 : 명/천원)

지역	아동양육시설(14개소)			한부모시설(5개소)		
	종사자수(명)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천원)	종사자수(명)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천원)
전주	57	11	25,034	4	9	26,134
군산	62	11	24,930	6	7	24,536
익산	52	10	23,193	4	13	28,777
정읍	20	10	25,042	-	-	-
완주	13	8	22,909	4	18	31,992
고창	27	11	24,891	-	-	-
합계	231	10	24,456	18	11	27,490
지역	사회복지생활시설(10개소)			노숙인자활시설(1개소)		
	종사자수(명)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천원)	종사자수(명)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천원)
전주	26	9	25,639	3	10	30,624
군산	9	10	27,369	-	-	-
익산	12	10	25,381	-	-	-
남원	8	7	21,714	-	-	-
완주	7	10	27,235	-	-	-
진안	7	6	22,755	-	-	-
임실	10	8	25,035	-	-	-
합계	79	9	25,209	3	10	30,624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지역별로 동일시설유형 간의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의 평균 10호봉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시 익산이 23,193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정읍이 25,042천원의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음
- 생활시설의 지역별 급여격차수준은 동일호봉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시 연간 약 180천원 ~ 198천원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Ⅲ-11〉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단위 : 명/천원)

지역	장애인복지관(4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9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10개소)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 급여(천원)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 급여(천원)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 급여(천원)
전주				15	7	24,789	3	10	23,656
군산				7	6	22,975	3	6	21,675
익산				7	6	23,628	3	4	21,949
정읍							2	6	24,608
남원							3	8	22,617
김제	11	12	25,159				3	9	23,126
완주							2	8	21,376
진안									
무주	12	11	26,160				2	9	24,279
장수	12	10	26,652				1	8	21,400
임실									
순창							3	7	21,357
고창									
부안	14	11	25,294						
합계	49	11	25,808	29	6	24,071	25	7	22,603

〈표Ⅲ-12〉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2

(단위 : 명/천원)

지역	장애인수화통역센터(6개소)			사회복귀이용시설(2)			장애인점자도서관(1개소)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 급여(천원)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 급여(천원)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 급여(천원)
전주				6	11	27,903	1	15	26,244
군산	4	6	19,461						
익산				5	10	26,558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1	3	19,032						
부안	3	6	20,266						
합계	8	6	19,709	11	10	27,292			



- 이용시설의 지역별 급여수준은 동일호봉 비교시 전체적으로 약 60만원~80만원 정도의 급여격차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경우 6호봉 기준 비교시 정읍이 24,608천원, 군산 21,675천원으로 약 2,933천원의 다소 높은 급여차이를 보임

〈표Ⅲ-13〉 세부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단위 : 천원/년)

시설유형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수당	종사자수당
아동양육시설	1,673	1,185	2,110	450	1,612
한부모시설	-	-	2,136	-	1,694
장애인복지관	-	565	2,081	791	1,53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1,997	1,720	1,505
장애인심부름센터	-	-	1,956	1,786	1,516
장애인수화통역센터	600	-	1,749	-	-
사회복귀시설	3,600	-	1,963	-	1,617
노숙인자활시설	-	-	2,838	-	-
점자도서관	-	-	2,174	-	-

\*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결측 및 누락으로 인해 시설유형별로 수당지급여부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의 경우 명절휴가수당이 모든 시설유형에서 지급되고 있었고,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만 지급되고 있음
- 시설유형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이 다양하게 나타나 시설유형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침

〈표Ⅲ-14〉 종사자 규모별 시설 현황

구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전체시설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5명 미만	4	13.3	18	56.3	22	35.5
5명 이상~ 10명 미만	7	23.3	10	31.3	17	27.4
10명 이상 ~ 15명 미만	4	13.3	-	-	4	6.5
15명 이상 ~ 20명 미만	8	26.7	4	12.5	12	19.4
20명 이상	7	23.3	-	-	7	11.3
전체	30	100.0	32	100.0	62	100.0

- 전체적으로 5명 미만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시설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명 이상 ~ 10명 미만 규모의 시설이 27.4%로 이어서 많았음
  - 생활시설의 경우 종사자가 15명에서 20명 미만까지 근무하는 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용시설은 5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56.3%로 가장 많음
  
-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20년 이상되는 시설장이 근무하는 시설로는 생활시설 시  
설장이 42.9%로 나타났고, 이용시설은 10년 미만 경력의 시설장이 56.3%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10미만 경력의 시설장이 36.4%의 비중을 차지함

〈표Ⅲ-15〉 시설장 경력

시설유형	구분	시설수	비율(%)
전 체	10년 미만	16	36.4
	10년 이상~20년 미만	14	31.8
	20년 이상	14	31.8
	전체	44	100.0
이용시설	10년 미만	9	56.3
	10년 이상~20년 미만	5	31.3
	20년 이상	2	12.5
	소계	16	100.0
생활시설	10년 미만	7	25.0
	10년 이상~20년 미만	9	32.1
	20년 이상	12	42.9
	소계	28	100.0

- 종사자의 근무경력으로는 전체적으로 6년~10년의 근무경력이 33.5%로 가장 많았고, 3년~5년 경력의 근무자가 그 뒤를 이어 나타남

〈표Ⅲ-16〉 직원 사회복지 총 경력

시설유형	구분	직원 수	비율(%)
전 체	3년 미만	96	19.8
	3년~5년	107	22.1
	6년~10년	162	33.5
	11년~15년	67	13.8
	16년~20년	26	5.4
	20년 이상	26	5.4
	소계	484	100.0
이용시설	3년 미만	28	19.3
	3년~5년	34	23.4
	6년~10년	50	34.5
	11년~15년	23	15.9
	16년~20년	8	5.5
	20년 이상	2	1.4
	소계	145	100.0
생활시설	3년 미만	68	20.1
	3년~5년	73	21.5
	6년~10년	112	33.0
	11년~15년	44	13.0
	16년~20년	18	5.3
	20년 이상	24	7.1
	소계	339	100.0

### 3. 실태조사 결과(지방이양시설)

- 지방이양시설의 기본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이용시설 관장은 15호봉일 때 100.0%수준의 준수율을 보임

〈표Ⅲ-17〉 이용시설 급여수준-기본급 비교

(단위 : 천원/월, %)

구분	관장			구분	과장			구분	사회복지사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5호봉	2,440	2,564	95.2	8호봉	2,188	2,339	93.5	5호봉	1,726	1,821	94.8
10호봉	2,797	3,089	90.5	10호봉	2,230	2,529	88.2	9호봉	1,956	2,106	92.9
15호봉	3,513	3,513	100.0	15호봉	2,275	2,889	78.7	11호봉	2,129	2,218	96.0
19호봉	3,661	3,765	97.2	20호봉	2,481	3,161	78.5	14호봉	2,275	2,349	96.8
25호봉	3,901	4,049	96.3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지방이양시설 이용시설의 기본급 기준 관장의 평균 급여는 25호봉 기준 3,901천원으로 복지부가이드라인의 96.3%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음

〈표Ⅲ-18〉 이용시설 급여수준-보수(수당포함) 비교

(단위 : 천원/월, %)

구분	관장			구분	과장			구분	사회복지사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전북(A)	복지부(B)	A/B
5호봉	2,768	2,820	98.2	8호봉	2,370	2,573	92.1	5호봉	1,920	2,003	95.9
10호봉	3,030	3,398	89.2	10호봉	2,462	2,782	88.5	9호봉	2,118	2,317	91.4
15호봉	3,984	3,864	103.1	15호봉	3,115	3,178	98.0	11호봉	2,438	2,440	99.9
19호봉	4,302	4,142	103.9	20호봉	3,515	3,477	101.1	14호봉	2,459	2,584	95.2
25호봉	4,514	4,454	101.3								

\*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수당포함분석은 전북은 정근수당, 직책수당,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지원, 복지수당, 체력단련비, 종사자처우개선 등 총 11종 포함, 복지부는 명절휴가비 1종 포함

- 전체적으로 평균 9호봉 기준으로 연간 25,665천원 수준의 기본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당을 포함한 경우 29,862천원으로 나타남

〈표Ⅲ-19〉 이용시설 급여수준 및 인력

구분	직위	종사자수(n)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 (천원)	연간총보수 (천원)
이용시설 급여기준	관장	17	14	35,768	42,955
	부장	15	14	35,246	40,570
	과장	25	13	27,521	33,392
	팀장(선임사회복지사)	40	9	24,169	27,679
	사회복지사	52	4	19,855	22,475
	소계	149	9	25,665	29,862

〈표Ⅲ-20〉 시설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단위 : 천원/연, %)

직위	노인복지관(14개소)					사회복지관(6개소)				
	종사자 수 (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종사자 수 (명)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관장	12	12	36,910	39,396	93.7	5	19	33,028	45,180	73.1
부장	11	13	36,729	36,540	100.5	4	17	31,167	39,744	78.4
과장	13	12	29,012	32,304	89.8	12	15	25,907	34,668	74.7
선임사회복지사	23	8	24,716	26,628	92.8	17	10	23,430	28,164	83.2
사회복지사	34	5	20,915	21,852	95.7	16	4	17,934	21,216	84.5
합계	93	9	26,921	28,526	94.4	54	10	23,814	29,215	81.5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기본급여수준으로는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은 평균 9호봉에 28,526천원, 사회복지관 10호봉 기준 29,215천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21〉 지역간 시설 유형별 기본급여수준 및 인력 - 1

(단위 : 천원/년, %)

지역	노인복지관(14개소)			사회복지관(6개소)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 (천원)	종사자수 (명)	평균호봉	연간평균급여 (천원)
전주	45	10	28,359	26	9	23,196
군산	10	9	26,798	18	10	27,360
익산						
정읍	11	10	28,054	10	15	19,036
남원	7	4	24,501			
김제						
완주						
진안						
무주	6	6	20,867			
장수	2	3	19,556			
임실	6	10	28,246			
순창						
고창	6	8	24,277			
부안						
합계	93	9	26,921	54	10	23,814

- 지역별로 동일시설유형간의 급여수준으로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10호봉 기준으로 28,054천원 ~ 28,359천원으로 약 305천원 수준의 급여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급여격차수준이 낮게 나타남

〈표Ⅲ-22〉 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단위 : 천원/년)

	정근수당	직책수당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수당	가계안정지원	복지수당	체력단련비	종사자수당
노인복지관		1,572				48	2,244		1,008		
사회복지관		1,838				701	1,752		1,374		

-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명절휴가수당과 복지수당, 직책수당, 급식비, 복지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23〉 종사자 규모별 시설 현황

구분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전체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6	42.9	2	33.3	8	40.0
10명 이상 ~ 15명 미만	7	50.0	4	66.7	11	55.0
15명 이상 ~ 20명 미만	1	7.1	0	.0	1	5.0
20명 이상 ~ 25명 미만						
25명 이상 ~ 30명 미만						
30명 이상						
전체	14	100.0	6	100.0	20	100.0

- 전체적으로 10명 이상 ~ 15명 미만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설이 55.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명 이상 ~ 10명 미만 규모의 시설이 40.0%, 15명 이상 ~ 20명 미만 시설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Ⅲ-24〉 시설장 경력

시설유형	구분	시설수	비율(%)
전 체	10년 미만	7	43.8
	10년 이상~20년 미만	6	37.5
	20년 이상	3	18.8
	전체	16	100.0
노인복지관	10년 미만	5	45.5
	10년 이상~20년 미만	5	45.5
	20년 이상	1	9.1
	소계	11	100.0
사회복지관	10년 미만	2	40.0
	10년 이상~20년 미만	1	20.0
	20년 이상	2	40.0
	소계	5	100.0

- 사회복지분야 경력 20년 이상되는 시설장이 근무하는 시설로는 노인복지관은 1개소로 9.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관은 2개소 40.0%, 전체적으로는 18.8%의 비중을 보임
- 전체적으로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시설장이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년 이상~20년 미만 37.5%,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시설장이 18.8%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종사자의 근무경력으로는 전체적으로 6년 ~ 10년의 근무경력이 28.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년 ~ 5년 경력 23.7%, 3년 미만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관의 경우 6년~10년의 경력자가 32.3%로, 사회복지관은 3년미만 경력자가 28.6%로 가장 많음

〈표Ⅲ-25〉 직원 사회복지 총 경력

시설유형	구분	직원 수	비율(%)
전 체	3년 미만	39	22.5
	3년~5년	41	23.7
	6년~10년	49	28.3
	11년~15년	28	16.2
	16년~20년	14	8.1
	20년 이상	2	1.2
	소계	173	100.0
노인복지관	3년 미만	25	20.2
	3년~5년	29	23.4
	6년~10년	40	32.3
	11년~15년	20	16.1
	16년~20년	10	8.1
	20년 이상	0	.0
	소계	124	100.0
사회복지관	3년 미만	14	28.6
	3년~5년	12	24.5
	6년~10년	9	18.4
	11년~15년	8	16.3
	16년~20년	4	8.2
	20년 이상	2	4.1
	소계	49	100.0

#### 4. 지역별 비교분석

- 생활시설을 지역별로 나누어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도비지원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10호봉 기준으로 약 25백만원 수준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으나 익산은 23백만원으로 약 2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표 Ⅲ-26〉 지역별 생활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1

(단위 : 천원/년, %)

구분	직위	도비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전주	원장	8	19	39,673	45,180	87.8					
	사무국장	14	13	28,848	36,540	78.9					
	과장/생활복지사	15	9	26,144	29,220	89.5					
	생활지도원	53	8	22,199	24,048	92.3					
	합계	90	10	25,444	28,383	89.6					
군산	원장	7	18	36,153	44,484	81.3					
	사무국장	7	15	32,324	38,232	84.5					
	과장/생활복지사	10	10	24,911	30,348	82.1					
	생활지도원	53	9	22,844	24,264	94.1					
	합계	77	10	25,184	27,682	91.0					
익산	원장	5	20	38,433	45,828	83.9					
	사무국장	6	14	28,460	37,392	76.1					
	과장/생활복지사	14	8	23,604	28,068	84.1					
	생활지도원	43	9	21,681	24,264	89.4					
	합계	68	10	23,907	27,846	85.9					
정읍	원장	1	30	46,469	50,496	92.0					
	사무국장	1	20	38,311	41,736	91.8					
	과장/생활복지사	4	12	27,322	32,304	84.6					
	생활지도원	14	8	21,912	24,048	91.1					
	합계	20	10	25,042	27,219	92.0					
남원	원장	-	-	-	-	-					
	사무국장	3	7	23,642	29,640	79.8					
	과장/생활복지사	3	7	21,357	26,880	79.5					
	생활지도원	2	7	19,358	23,280	83.2					
	합계	8	7	21,714	27,015	80.4					
완주	원장	3	25	41,196	48,588	84.8					
	사무국장	3	13	30,084	36,540	82.3					
	과장/생활복지사	5	11	26,548	31,428	84.5					
	생활지도원	13	6	20,758	22,716	91.4					
	합계	24	10	25,685	28,775	89.3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표Ⅲ-27〉 지역별 생활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2

(단위 : 천원/연, %)

구분	직위	도비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진안	원장	1	13	34,176	40,368	84.7					
	사무국장	2	5	20,993	27,144	77.3					
	과장/생활복지사	2	6	21,605	25,716	84.0					
	생활지도원	2	5	19,958	21,420	93.2					
	합계	7	6	22,755	26,479	85.9					
임실	원장	1	10	31,746	37,068	85.6					
	사무국장	1	10	25,686	33,456	76.8					
	과장/생활복지사	5	8	25,370	28,068	90.4					
	생활지도원	3	8	22,023	24,048	91.6					
	합계	10	8	25,035	27,775	90.1					
고창	원장	2	21	39,155	46,452	84.3					
	사무국장	2	20	35,754	41,736	85.7					
	과장/생활복지사	5	8	23,689	28,068	84.4					
	생활지도원	18	9	22,433	24,264	92.5					
	합계	27	11	24,891	28,613	87.0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표Ⅲ-28〉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1

(단위 : 천원/연, %)

구분	직위	도비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전주	관장	2	17	33,857	43,752	77.4	10	12	34,998	39,396	88.8
	부장	4	10	25,215	33,456	75.4	8	14	37,674	37,392	100.8
	과장	1	15	27,636	34,668	79.7	13	13	28,128	33,120	84.9
	선임사회복지사	5	9	24,515	27,432	89.4	21	10	24,048	28,164	85.4
	사회복지사	13	6	24,437	22,704	107.6	19	4	18,800	21,216	88.6
	소계	25	9	25,459	27,807	91.6	71	10	26,468	29,827	88.7
군산	관장	2	5	25,986	30,768	84.5	2	19	42,657	45,180	94.4
	부장						3	16	35,992	39,000	92.3
	과장						4	14	31,926	33,912	94.1
	선임사회복지사	1	9	21,768	27,432	79.4	9	8	25,331	26,628	95.1
	사회복지사	11	6	20,905	22,704	92.1	10	5	21,149	21,852	96.8
	소계	14	6	21,692	24,145	89.8	28	9	27,160	28,019	96.9

익산	관장	3	12	33,288	39,396	84.5					
	부장	1	9	27,750	32,208	86.2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2	8	23,880	26,628	89.7					
	사회복지사	9	4	20,962	21,216	98.8					
	소계	15	7	24,269	26,127	92.9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표Ⅲ-29〉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2  
(단위 : 천원/연, %)

구분	직위	도비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
정읍	관장	1	1	25,699	28,476	90.2	3	16	32,436	42,972	75.5
	부장						3	16	30,667	39,000	78.6
	과장						6	15	22,043	34,668	63.6
	선임사회복지사	1	10	23,517	28,164	83.5	6	8	21,725	26,628	81.6
	사회복지사						3	6	15,677	22,704	69.0
	소계	2	6	24,608	28,290	87.0	21	12	23,759	32,162	73.9
남원	관장	1	9	26,499	35,712	74.2	1	3	28,656	29,592	96.8
	부장						1	6	27,315	28,440	96.0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1	5	23,070	23,976	96.2
	사회복지사	2	7	20,675	23,520	87.9	4	4	23,116	21,216	109.0
	소계	3	8	22,617	27,644	81.8	7	4	24,501	23,642	103.6
김제	관장	1	23	43,098	47,580	90.6					
	부장	2	11	27,951	34,656	80.7					
	과장	5	11	21,975	31,428	69.9					
	선임사회복지사	3	9	22,605	27,432	82.4					
	사회복지사	3	9	23,144	25,272	91.6					
	소계	14	11	24,723	30,741	80.4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이용시설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도비지원시설의 경우 시 단위 소재시는 전반적으로 평균 6호봉 21,692천원에서 11호봉 24,723천원 수준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고, 지방이양시설은 4호봉 24,501천원에서 많게는 12호봉 23759천원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음

-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정읍의 평균호봉이 12호봉으로 가장 높으나 급여수준은 23,759천원으로 전주 10호봉 26,468천원, 군산 9호봉 27,160천원 등의 급여수준보다 낮음

〈표Ⅲ-30〉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3

(단위 : 천원/연, %)

구분	직위	도비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
완주	관장	1	2	17,198	29,004	59.3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	13	25,554	27,504	92.9					
	소계	2	8	21,376	29,322	72.9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표Ⅲ-31〉 지역별 이용시설기준 종사자 급여현황 비교 - 4

(단위 : 천원/연, %)

구분	직위	도비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 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
무주	관장	2	17	34,679	43,752	79.3					
	부장	1	23	39,036	43,428	89.9					
	과장	1	15	31,068	34,668	89.6					
	선임사회복지사	5	8	23,309	26,628	87.5					
	사회복지사	5	6	21,293	22,704	93.8					
	소계	14	10	25,891	29,186	88.7					
장수	관장	1	22	45,086	47,028	95.9					
	부장	2	19	38,714	41,112	94.2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2	11	27,314	28,572	95.6					
	사회복지사	8	5	20,510	21,852	93.9					
	소계	13	9	26,248	27,474	95.5					

구분	직위	도비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천원)	준수율 (%)	종사자 수	평균 호봉	연간 평균급여 (천원)	연간 복지부 급여	준수율 (%)
임실	관장						1	25	46,807	48,588	96.3
	부장										
	과장						1	10	29,628	30,348	97.6
	선임사회복지사						2	9	27,002	27,432	98.4
	사회복지사						2	2	19,519	19,920	98.0
	소계						6	10	28,246	29,280	96.5
순창	관장	1	3	21,459	29,592	72.5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2	9	21,306	25,272	84.3					
	사회복지사	2	7	21,357	26,684	80.0					
	소계	3	7	21,357	26,684	80.0					
고창	관장										
	부장										
	과장						1	14	32,780	33,912	96.7
	선임사회복지사						1	9	26,344	27,432	96.0
	사회복지사						4	6	21,634	22,704	95.3
	소계						6	8	24,277	25,308	95.9
부안	관장	1	15	36,996	42,156	87.8					
	부장	1	16	34,620	39,000	88.8					
	과장	2	15	28,455	34,668	82.1					
	선임사회복지사	7	9	22,370	27,432	81.5					
	사회복지사	6	8	21,634	24,288	89.1					
	소계	17	10	24,407	28,481	85.7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기본급(사회복지직) 기준

- 군단위 소재의 이용시설의 경우 낮게는 순창 7호봉 21,357천원에서, 높게는 무주 10호봉 25,891천원 수준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32〉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1

(단위 : 천원/연)

	시설유형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수당	종사자수당
전주	아동양육시설			2,052	450	1,610
	한부모시설			2,098		1,698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94	1,800	1,491
	장애인심부름센터			2,000		1,620
	장애인수화통역센터			2,167		
	사회복귀시설			2,122		1,500
	노숙인자활시설			2,838		
	점자도서관			2,174		
군산	아동양육시설			1,976		1,607
	한부모시설			1,854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865		1,530
	장애인심부름센터			1,678		1,415
	장애인수화통역센터			1,618		
	사회복귀시설			2,082		1,622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익산	아동양육시설	125		1,925		
	한부모시설			2,254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870		
	장애인심부름센터			2,191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사회복귀시설			2,046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정읍	아동양육시설			3,491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2,117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사회복귀시설	3,600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남원	아동양육시설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205,630		
	장애인수화통역센터			341,586		
	사회복귀시설			531,685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표Ⅲ-33〉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2

(단위 : 천원/연)

	시설유형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수당	종사자수당
김제	아동양육시설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1,78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2,117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완주	아동양육시설			2,020		
	한부모시설			2,453		1,728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1,758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사회복귀시설			2,152		1,575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무주	아동양육시설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2,06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1,930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장수	아동양육시설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2,38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1,804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결측 및 누락으로 인해 시설유형별로 수당지급여부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각종 수당의 경우 명절휴가수당은 모든 시설유형에서 지급되고 있었으나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종사자 수당등의 지급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전주와 군산의 경우 명절휴가수당과 종사자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익산은 명절휴가수당과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등의 지급되는 수당이 차이가 있음

(표Ⅲ-34)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도비지원시설 3  
(단위 : 천원/연)

	시설유형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수당	종사자수당
순창	아동양육시설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1,770		
	장애인수화통역센터			1,427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고창	아동양육시설			1,962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1,386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부안	아동양육시설					
	한부모시설					
	장애인복지관			2,13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1,688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점자도서관					



〈표 III-35〉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지급수당 - 지방이양시설

(단위 : 천원/연)

시설유형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수당	종사자수당
전주	노인복지관	1,582		2,357	1,490	
	사회복지관	1,691		2,007	1,087	
군산	노인복지관			2,465		
	사회복지관			1,984	1,442	
정읍	노인복지관			2,098		
	사회복지관			625		

- 지방이양시설의 경우도 전주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산에서는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등 지역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남

## 5. 국비지원시설 임금현황 조사

- 전라북도 국비지원시설의 임금수준을 가이드라인 준수정도를 기준을 조사한 결과(전라북도 행정조사, 2015)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15년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나머지 국비지원시설은 14년도 가이드라인 혹은 별도의 사업별 기준하에 임금 지급

〈표 III-36〉 전라북도 국비지원시설 급여제공 현황

인건비 기준	재원	시설유형	급여체계연봉	처우 개선 (특별수당)	개소	종사자	비고	
소 계					217	2,318		
I	'15년 공통가이드	국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5년 공통가이드의 100%	①안	1	4	
II	'14년 공통가이드	국비	장애인(법인운영)거주 시설	'15년 공통가이드의 96%	①안	33	821	
			노인양로			6	78	
			정신요양			4	138	
		도 이 양	아동양육, 치료, 자립지 원	'15년 공통가이드의 96%	①안	16	306	
			장애인단기거주, 지역 사회재활, 직업재활, 공 동생활가정			105	618	
			한부모가족복지			7	34	
			사회복귀			17	124	
노숙인(자활)	①안	2	8					
III	사업별 별도가이드	국비	노인보호전문기관	'14년 공통가이드와 동일	①안	2	15	
			성폭력피해 통합지원 (해바라기아동)	* 운영비 : 578백만원/1개소 * 부서장 : 3,700만원/연 * 종사자 : 2,800만원/연	미지원	1	10	기준은 동일, 해바라 기센터는 인건비 기준 미충족
			성폭력피해 통합지원 (해바라기)	* 운영비 : 283백만원/1개소 * 부서장 : 3,157만원/연 * 종사자 : 2,300만원/연	①안	1	7	
			광역, 지역자활센터	* 운영비, 인건비 분리지원 * 운영비 - 확대형 248백만원/1개소 - 표준형 218백만원/1개소 - 기본형 185백만원/1개소 * 센터장(10호봉) : 2,851만원/연 * 종사자(대리 5호봉) : 1,722 만원/연	①안	19	111	
			노숙인(재활, 요양)	'15년 공통가이드의 81% 전주시 시설장 : 35,798천원/연 (기본급 30,908천원, 수당 4,890천원) 생활복지사 : 26,412천원/연  (기본급 20,517천원, 수당 5,895천원)	①안	3	44	

인건비 기준	재원	시설유형	급여체계·연봉	처우 개선 (특별수당)	개소	종사자	비고	
IV	예산액 범위내제	국비	지역아동센터	* 운영비의 85% 이내 인건비 사용 * 시설장 1,620~1,680만원/연 * 종사자 1,320~1,440만원/연	②안	285	593	
			이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인건비 20,915천원/연	미지원	44	94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 운영비 7,000만원/1개소 * 시설장 2,153만원/연 * 상담원 1,681만원/연	③안	13	39	
			가정폭력통합지원 (1366)	* 운영비 : 375백만원/1개소 * 시설장 : 2,400만원/연 * 상담원 : 2,100만원/연	①안	1	1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 운영비 10인상 85백만원, 16 인이상 124백만원 * 시설장 : 2,153만원/연 * 상담원 : 1,681만원/연	①안	4	18	
			성폭력피해자보호	* 운영비 10인이상 107백만원 * 시설장 : 2,153만원/연 * 상담원 : 1,681만원/연	①안	2	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개소당 운영비 - 그룹홈 48백만원, 쉼터 151백만원, 상담소 141백만 원, 자활 390백만원 * 시설장·종사자 : 2,400만원/연	* 그룹홈, 쉼터 - ①안 * 상담, 자활 - ③안	4	19	
			학대노인쉼터	* 인건비지원 88,060천원/1개소 * 운영비 86,760천원/1개소 * 사회복지사 26,134천원/연 * 요양보호사 20,642천원/연	①안	1	4	
V	기타	시군 이양	노인복지관	'12년~'15년 공통 가이드(시군별상이) -'15년 기준 : 전주,지안 -'14년 기준 : 군산,완주,임실, 순창,고창,부안 -'13년 기준 : 남원,무주,장수 -'12년 기준 : 익산,정읍,김제	①안	23	286	
			사회복지관	'13년~'15년 공통 가이드 (시군별 상이) -'15년 기준 : 전주,익산,고창 -'14년 기준 : 군산,남원,김제,부안 -'13년 기준 : 정읍	①안	17	167	
		도 이양	도립 노인복지관	'12년 공통 가이드 (-'15년 공통가이드의 00%)	①안	1	9	
			장애인(개인운영) 거주시설	'14년 공통가이드의 70% -'14.7월부터 인건비지원	미지원	12	93	
		국비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사업별 별도기준		296	3,324	* 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 교사정직 원장 7.5만원 * 0~2세반 10만원 * 3~5세반 원장 5만원
		기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시설별 자율계약 (최저임금 이상)		1,312	7,836	

자료 : 전라북도(2015) 내부자료



## 제4장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추계

1. 조사개요
2. 전문성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추계

### 1. 조사개요

#### 1) 소요예산 추정(도비지원)

- 종사자의 급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본급 비교시 이용시설의 경우 평균 9호봉에 24,492천원으로 가이드라인 27,996천원 대비 87.5%, 생활시설은 평균 10호봉, 24,852천원으로 가이드라인 28,142천원 대비 88.3%의 수준

〈표Ⅳ-1〉 복지부가이드라인 대비 전북복지시설 기본급여 수준

(단위 : 천원, %)

시설유형	A			B	A/B
	직위	평균호봉	연간평균기본급	복지부 기준 급여	복지부 대비
이용시설	관장	12	31,560	39,396	80.1
	부장	13	30,504	36,540	83.5
	과장	13	25,056	33,120	75.7
	팀장	9	23,508	27,432	85.7
	사회복지사	6	21,876	22,704	96.4
	전체 평균	9	24,492	27,996	87.5
생활시설	원장	20	38,460	45,828	83.9
	사무국장	13	29,220	36,540	80.0
	과장/생활복지사	9	24,864	29,220	85.1
	생활지도원	8	22,116	24,048	92.0
	전체 평균	10	24,852	28,142	88.3

\*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기준

〈표Ⅳ-2〉 복지부가이드라인 대비 전복복지시설 총급여(수당포함) 수준

(단위 : 천원, %)

시설유형	A			B	A/B
	직위	평균호봉	연간평균보수액	복지부 기준 급여	복지부 대비
이용시설	관장	12	35,052	43,336	80.9
	부장	13	34,164	40,194	85.0
	과장	13	27,960	36,432	76.7
	팀장	9	26,388	30,175	87.4
	사회복지사	6	24,504	24,974	98.1
	전체 평균	9	27,396	30,796	89.0
생활시설	원장	20	43,380	50,411	86.1
	사무국장	13	32,436	40,194	80.7
	과장/생활복지사	9	27,732	32,142	86.3
	생활지도원	8	24,732	26,453	93.5
	전체 평균	10	27,792	30,956	89.8

\*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기준

\* 수당포함 : 전복 -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수당 등 총 11종 포함, 복지부 - 명절휴가비 포함

- 수당을 포함한 급여수준은 이용시설이 89.0%, 생활시설이 89.8%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임

〈표Ⅳ-3〉 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공무원 임금 인상을 적용 급여

(단위 : 천원, %)

구분		인상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복지부	기본	이용시설	3.4%	27,996	28,935	29,905	30,909	31,945
		생활시설	5.0%	28,142	29,555	31,039	32,597	34,234
	수당포함	이용시설	3.4%	30,796	31,829	32,897	34,000	35,141
		생활시설	5.0%	30,956	32,511	34,144	35,859	37,661
공무원	기본	이용시설	4.5%	24,483	25,585	26,737	27,940	29,198
		생활시설	4.5%	25,066	26,194	27,373	28,605	29,892
	수당포함	이용시설	4.0%	32,740	34,034	35,379	36,777	38,231
		생활시설	4.0%	33,753	35,088	36,476	37,918	39,418

\* 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 이용시설 9호봉, 생활시설 10호봉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급여 계산

\* 공무원급여 적용 기준 : 이용시설 9호봉, 생활시설 10호봉을 기준으로 5급~9급 평균급여 계산

\* 수당 : 복지부(명절휴가비 포함), 공무원(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포함)



-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인상률의 경우 이용시설은 전년대비 3.4%, 생활 시설은 5.0%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인상률은 4.5%, 수당포함급여는 4.0%의 인상률 임

〈표Ⅳ-4〉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회동	종사자 수	급여 현황					필요예산		
			전북(A)		복지부(B)		A/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4,492	14,866,644	27,996	16,993,572	87.5	427,571	1,277,249	2,126,928
생활 시설	10	496	24,852	12,326,592	28,142	13,958,432	88.3	235,997	933,918	1,631,840
계		1,103		27,193,236		30,952,004		663,568	2,211,168	3,758,768

〈표Ⅳ-5〉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회동	종사자 수	급여 현황					필요예산		
			전북(A)		복지부(B)		A/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7,396	16,629,372	30,796	18,693,172	89.0	194,483	1,129,141	2,063,800
생활 시설	10	496	27,792	13,784,832	30,956	15,354,176	89.8	33,926	801,635	1,569,344
계		1,103		30,414,204		34,047,348		228,409	1,930,777	3,633,144

- 전북의 급여수준 현황을 기준으로 기본급여를 2014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까지 급여수준을 맞출 경우 필요한 예산은 총 약 22.1억원이 필요하고, 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약 19.3억원의 예산 필요
-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의 경우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기본급 수준보다 2% 정도 오르기 때문에 필요예산액이 더 적어짐

〈표Ⅳ-6〉 2014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도비보조비율		필요예산(기본급여)			필요예산(수당포함)		
			90%	95%	100%	90%	95%	100%
이용 시설	총액		427,571	1,277,249	2,126,928	194,483	1,129,141	2,063,800
	도비	30%	128,271	383,175	638,078	58,345	338,742	619,140
	시군비	70%	299,300	894,074	1,488,850	136,138	790,399	1,444,660
생활 시설	총액		235,997	933,918	1,631,840	33,926	801,635	1,569,344
	도비	19%	44,839	177,444	310,050	6,446	152,311	298,175
	시군비	81%	191,158	756,474	1,321,790	27,480	649,324	1,271,169
계	총액		663,568	2,211,168	3,758,768	228,409	1,930,777	3,633,144
	도비	24%	159,256	530,680	902,104	54,818	463,386	871,955
	시군비	76%	504,312	1,680,488	2,856,664	173,591	1,467,391	2,761,189

- 필요예산을 도비보조비율로 나누면 기본급의 경우 필요예산 도비는 약 5.3억원, 수당포함급여 경우 약 4.6억원이 필요

〈표Ⅳ-7〉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호봉	종사자 수	급여 현황				A/B	필요예산		
			전북(A)		복지부(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4,492	14,866,644	28,935	17,563,545	84.6	940,547	1,818,724	2,696,901
생활 시설	10	496	24,852	12,326,592	29,555	14,659,280	84.1	866,760	1,599,724	2,332,688
계		1,103		27,193,236		32,222,825		1,807,307	3,418,448	5,029,589

〈표Ⅳ-8〉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호봉	종사자 수	급여 현황				A/B	필요예산		
			전북(A)		복지부(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7,396	16,629,372	31,829	19,320,203	86.1	758,811	1,724,821	2,690,831
생활 시설	10	496	27,792	13,784,832	32,511	16,125,456	85.5	728,078	1,534,351	2,340,624
계		1,103		30,414,204		35,445,659		1,486,889	3,259,172	5,031,455

〈표Ⅳ-9〉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도비보조비율		필요예산(기본급여)			필요예산(수당포함 총급여)		
			90%	95%	100%	90%	95%	100%
이용 시설	총액		940,547	1,818,724	2,696,901	758,811	1,724,821	2,690,831
	도비	30%	282,164	545,617	809,070	227,643	517,446	807,249
	시군비	70%	658,383	1,273,107	1,887,831	531,168	1,207,375	1,883,582
생활 시설	총액		866,760	1,599,724	2,332,688	728,078	1,534,351	2,340,624
	도비	19%	164,684	303,948	443,211	138,335	291,527	444,719
	시군비	81%	702,076	1,295,776	1,889,477	589,743	1,242,824	1,895,905
계	총액		1,807,307	3,418,448	5,029,589	1,486,889	3,259,172	5,031,455
	도비	24%	433,754	820,428	1,207,101	356,853	782,201	1,207,549
	시군비	76%	1,373,553	2,598,020	3,822,488	1,130,036	2,476,971	3,823,906

- 2015년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수준으로 맞출 경우 기본급의 경우 약 34.1억원이 필요하고, 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약 3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 필요한 예산을 시군과의 지원비율을 적용하였을 시 기본급의 경우 약 8.2억원, 수당을 포함한 경우 약 7.8억원의 예산이 필요

## 2) 공무원 급여 적용시 소요예산

- 공무원급여수준의 95%까지 맞추기위해 공무원의 직급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위를 비교했을 경우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의 급여수준이 기본급일 경우 100%를 초과하였고, 관장과 원장은 기본급 비교시 85%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남
  - 직위가 높을수록 급여수준이 낮게 나타나 향후 급여지원시 직위별로 차등지원이 필요함

〈표Ⅳ-10〉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전북복지시설 기본급여 수준

(단위 : 천원, %)

시설 유형	A			B		A/B	C		A/C	D		A/D
	직위	평균 호봉	연간평균 기본급	공무원		공무원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직급	급여		직급	급여		직급	급여	
이용 시설	관장	12	31,560	5급	37,418	84.3	6급	31,967	98.7	7급	28,866	109.3
	부장	13	30,504	6급	32,860	92.8	7급	29,675	102.8			
	과장	13	25,056	7급	29,675	84.4	8급	26,639	94.1			
	팀장	9	23,508	8급	23,569	99.7						
	사회복지사	6	21,876	9급	18,866	116.0						
생활 시설	원장	20	38,460	5급	44,036	87.3	6급	37,945	101.4	7급	34,382	111.9
	사무국장	13	29,220	6급	32,860	88.9	7급	29,675	98.5			
	과장/생활복지사	9	24,864	7급	26,226	94.8	8급	23,569	105.5			
	생활지도원	8	22,116	9급	20,513	107.8						

\*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급 기준

〈표Ⅳ-11〉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전북복지시설 총급여(수당포함) 수준

(단위 : 천원, %)

시설 유형	A			B		A/B	C		A/C	D		A/D
	직위	평균 호봉	연간평균 보수액	공무원		공무원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직급	급여		직급	급여		직급	급여	
이용 시설	관장	12	35,052	5급	49,558	70.7	6급	41,968	83.5	7급	38,118	92.0
	부장	13	34,164	6급	43,024	79.4	7급	39,075	87.4			
	과장	13	27,960	7급	39,075	71.6	8급	35,063	79.7			
	팀장	9	26,388	8급	31,114	84.8						
	사회복지사	6	24,504	9급	25,116	97.6						
생활 시설	원장	20	43,380	5급	57,869	75.0	6급	49,522	87.6	7급	45,125	96.1
	사무국장	13	32,436	6급	43,024	75.4	7급	39,075	83.0			
	과장/생활복지사	9	27,732	7급	34,656	80.0	8급	31,114	89.1			
	생활지도원	8	24,732	9급	27,352	90.4						

\*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급 기준

\* 공무원 수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정액급식비(13만원)

〈표Ⅳ-12〉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기본급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호봉	종사자 수	급여 현황					필요예산		
			전북(A)		공무원(B)		A/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4,492	14,866,644	24,483	14,861,181	100.0	-1,491,581	-748,522	-5,463
생활 시설	10	496	24,852	12,326,592	25,066	12,432,736	99.1	-1,137,130	-515,493	106,144
계		1,103		27,193,236		27,293,917		-2,628,711	-1,264,015	100,681

〈표Ⅳ-13〉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호봉	종사자 수	급여 현황					필요예산		
			전북(A)		공무원(B)		A/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7,396	16,629,372	32,740	19,873,180	83.7	1,256,490	2,250,149	3,243,808
생활 시설	10	496	27,792	13,784,832	33,753	16,741,488	82.3	1,282,507	2,119,582	2,956,656
계		1,103		30,414,204		36,614,668		2,538,997	4,369,731	6,200,464

- 전라북도의 급여현황을 기준으로 수당포함급여를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의 95% 수준으로 맞출 경우 약 43.6억원의 예산 필요하고 도비보조비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약 10.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수준으로 맞출 경우 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약 57.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도비보조비율을 적용하면 약 13.7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 기본급여의 경우 공무원비교직급 기준 급여수준이 2014년 기준 약 100%, 2015년 기준 약 95%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지원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표Ⅳ-14〉 2014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도비보조비율		필요예산(기본급여)			필요예산(수당포함 총급여)		
			90%	95%	100%	90%	95%	100%
이용 시설	총액		-1,491,581	-748,522	-5,463	1,256,490	2,250,149	3,243,808
	도비	30%	-447,474	-224,557	-1,639	376,947	675,045	973,142
	시군비	70%	-1,044,107	-523,965	-3,824	879,543	1,575,104	2,270,666
생활 시설	총액		-1,137,130	-515,493	106,144	1,282,507	2,119,582	2,956,656
	도비	19%	-216,055	-97,944	20,167	243,676	402,721	561,765
	시군비	81%	-921,075	-417,549	85,977	1,038,831	1,716,861	2,394,891
계	총액		-2,628,711	-1,264,015	100,681	2,538,997	4,369,731	6,200,464
	도비	24%	-630,891	-303,364	24,163	609,359	1,048,735	1,488,111
	시군비	76%	-1,997,820	-960,651	76,518	1,929,638	3,320,996	4,712,353

〈표Ⅳ-15〉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기본급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회봉	종사자 수	급여 현황				A/B	필요예산		
			전북(A)		공무원(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4,492	14,866,644	25,585	15,530,095	95.7	-889,559	-113,054	663,451
생활 시설	10	496	24,852	12,326,592	26,194	12,992,224	94.9	-633,590	16,021	665,632
계		1,103		27,193,236		28,522,319		-1,523,149	-97,033	1,329,083

〈표Ⅳ-16〉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필요예산 - 총급여(수당포함)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회봉	종사자 수	급여 현황				A/B	필요예산		
			전북(A)		공무원(B)			90%	95%	100%
			기준	소계	기준	소계				
이용 시설	9	607	27,396	16,629,372	34,034	20,658,638	80.5	1,963,402	2,996,334	4,029,266
생활 시설	10	496	27,792	13,784,832	35,088	17,403,648	79.2	1,878,451	2,748,634	3,618,816
계		1,103		30,414,204		38,062,286		3,841,853	5,744,968	7,648,082

〈표Ⅳ-17〉 2015년 기준 공무원급여(95%) 적용시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필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도비보조비율		필요예산(기본급여)			필요예산(수당포함 총급여)		
			90%	95%	100%	90%	95%	100%
이용 시설	총액		-889,559	-113,054	663,451	1,963,402	2,996,334	4,029,266
	도비	30%	-266,868	-33,916	199,035	589,021	898,900	1,208,780
	시군비	70%	-622,691	-79,138	464,416	1,374,381	2,097,434	2,820,486
생활 시설	총액		-633,590	16,021	665,632	1,878,451	2,748,634	3,618,816
	도비	19%	-120,382	3,044	126,470	356,906	522,240	687,575
	시군비	81%	-513,208	12,977	539,162	1,521,545	2,226,394	2,931,241
계	총액		-1,523,149	-97,033	1,329,083	3,841,853	5,744,968	7,648,082
	도비	24%	-365,556	-23,288	318,980	922,045	1,378,792	1,835,540
	시군비	76%	-1,157,593	-73,745	1,010,103	2,919,808	4,366,176	5,812,542

## 2. 전문성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 일반적으로 이용시설 종사자 255명(32.7%), 생활시설 종사자 509명(65.3%) 등의 종사자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결측데이터를 포함 총 77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표Ⅳ-18〉 전문성강화방안 설문대상 일반현황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254(32.6)	연령		20대	99(12.7)		
		여	511(65.6)			30대	268(34.4)		
		결측	14(1.8)			40대	205(26.3)		
		전체	779(100.0)			50대 이상	178(22.8)		
시설형태		이용시설	255(32.7)			결측	29(3.7)		
		생활시설	509(65.3)			전체	779(100.0)		
		결측	15(1.9)			시설유형		아동복지시설	236(30.3)
		전체	779(100.0)					노인복지시설	124(15.9)
직책	생활 시설	관리직	65(8.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2(2.8)				
		일반직	379(48.7)	장애인복지시설	266(34.1)				
		결측	335(43.0)	정신보건시설	67(8.6)				
직책	이용 시설	관리직	69(8.9)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2(.3)				
		일반직	111(14.2)	지역복지시설	23(3.0)				
		결측	599(76.9)	기타	3(.4)				
	전체	기타	136(17.5)	결측	36(4.6)				
		결측	64.(82.5)	전체	779(100.0)				
전체		전체	779(100.0)						



〈표Ⅳ-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일 - 1순위

구분		종사자 급여확대	종사자 급여표준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종사자 수당지급 및 현실화	종사자 안정적 고용유지	종사자 고충상담센터 설치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활용 활성화	
시설 형태	이용시설	52.9	23.9	3.9	6.7	11.0	.8	.8	
	생활시설	37.7	22.2	12.4	8.4	10.0	3.7	5.5	
시설 유형	이동복지시설	29.7	29.7	14.0	8.1	4.2	3.8	10.6	
	노인복지시설	48.4	23.4	4.0	9.7	13.7	.0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4.5	18.2	9.1	4.5	4.5	9.1	.0	
	장애인복지시설	47.7	18.8	9.0	8.3	12.4	3.0	.8	
	정신보건시설	52.2	11.9	14.9	3.0	13.4	1.5	3.0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50.0	50.0	.0	.0	.0	.0	.0	
	지역복지시설	43.5	34.8	.0	.0	17.4	4.3	.0	
	기타	66.7	33.3	.0	.0	.0	.0	.0	
직 책	생활 시설	관리직	33.8	38.5	7.7	9.2	7.7	1.5	1.5
		일반직	37.5	19.3	14.5	8.2	10.0	4.2	6.3
	이용 시설	관리직	47.8	29.0	1.4	8.7	11.6	.0	1.4
		일반직	49.5	20.7	4.5	9.0	14.4	.9	.9
전체		42.8	22.8	9.6	7.9	10.3	2.7	3.9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되는 1순위의 문제로는 종사자의 급여확대가 전체적으로 42.8%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는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24.5%, 3순위는 종사자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이 24.6%로 나타남

〈표Ⅳ-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일 - 2순위

구분		종사자 급여확대	종사자 급여표준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종사자 수당지급 및 현실화	종사자 안정적 고용유지	종사자 고충상담센터 설치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활용 활성화	
시설 형태	이용시설	15.3	29.4	14.9	28.6	9.0	.4	2.4	
	생활시설	11.9	16.9	29.4	21.8	8.7	2.4	8.9	
시설 유형	이동복지시설	11.6	11.6	34.5	19.8	7.8	2.6	12.1	
	노인복지시설	12.9	25.0	16.9	33.1	12.1	.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5	18.2	18.2	27.3	31.8	.0	.0	
	장애인복지시설	14.7	26.0	18.5	23.8	9.1	2.3	5.7	
	정신보건시설	17.9	25.4	32.8	17.9	1.5	1.5	3.0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0	.0	100.0	.0	.0	.0	.0	
	지역복지시설	13.0	21.7	8.7	30.4	8.7	.0	17.4	
	기타	.0	.0	.0	66.7	.0	.0	33.3	
직 책	생활 시설	관리직	21.5	10.8	26.2	24.6	9.2	3.1	4.6
		일반직	10.3	18.0	30.8	20.4	8.5	2.4	9.5
	이용 시설	관리직	17.4	40.6	14.5	18.8	7.2	.0	1.4
		일반직	16.2	28.8	13.5	28.8	9.0	.0	3.6
전체		13.0	21.1	24.5	24.1	8.8	1.7	6.7	

〈표Ⅳ-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일 - 3순위

구분		종사자 급여확대	종사자 급여표준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종사자 수당지급 현실화	종사자 안정적 고용유지	종사자 고충상담센터 설치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활용 활성화	
시설 형태	이용시설	11.9	8.3	25.7	28.1	12.6	3.6	9.9	
	생활시설	8.2	10.9	22.3	22.9	11.1	8.7	15.9	
시설 유형	아동복지시설	8.2	10.8	20.3	22.8	8.2	10.8	19.0	
	노인복지시설	17.9	7.3	28.5	21.1	10.6	2.4	1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	9.1	22.7	18.2	13.6	13.6	22.7	
	장애인복지시설	7.3	10.0	25.3	28.4	13.8	5.0	10.3	
	정신보건시설	7.5	16.4	16.4	28.4	17.9	4.5	9.0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0	.0	.0	100.0	.0	.0	.0	
	지역복지시설	21.7	8.7	21.7	30.4	4.3	8.7	4.3	
	기타	.0	.0	.0	.0	66.7	33.3	.0	
직 책	생활 시설	관리직	6.2	6.2	18.5	38.5	12.3	4.6	13.8
		일반직	8.5	12.2	23.1	21.0	10.4	8.8	16.0
	이용 시설	관리직	14.5	7.2	30.4	23.2	13.0	4.3	7.2
		일반직	11.8	7.3	27.3	29.1	11.8	2.7	10.0
전체		9.4	10.1	23.4	24.6	11.6	7.0	13.9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의 의무화가 58.8%로 가장 많았고, 도 및 시군의 지원 확대가 11.0%로 그 뒤를 이어 나타남

〈표Ⅳ-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구분		종사자 급여확대	종사자 급여표준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종사자 수당지급 현실화	종사자 안정적 고용유지	종사자 고충상담센터 설치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활용 활성화	
시설 형태	이용시설	57.7	4.7	7.1	10.3	8.3	11.9	9.9	
	생활시설	59.3	2.8	9.7	8.1	9.5	10.5	15.9	
시설 유형	아동복지시설	69.7	3.0	4.3	3.8	11.1	8.1	19.0	
	노인복지시설	50.0	5.7	13.9	8.2	7.4	14.8	1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1.8	.0	.0	4.5	4.5	9.1	22.7	
	장애인복지시설	49.2	3.4	9.8	17.4	8.7	11.4	10.3	
	정신보건시설	70.1	.0	7.5	1.5	11.9	9.0	9.0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100.0	.0	.0	.0	.0	.0	.0	
	지역복지시설	69.6	4.3	8.7	.0	.0	17.4	4.3	
	기타	66.7	.0	.0	.0	33.3	.0	.0	
직 책	생활 시설	관리직	69.8	3.2	4.8	7.9	7.9	6.3	13.8
		일반직	61.8	2.7	7.2	8.8	10.1	9.5	16.0
	이용 시설	관리직	54.4	10.3	5.9	8.8	4.4	16.2	7.2
		일반직	65.8	.9	6.3	9.9	7.2	9.9	10.0
전체		58.8	3.4	8.9	8.9	9.1	11.0	13.9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으로는 종사자의무보수교육의 실시가 71.8%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8.4시간, 개인부담 교육비는 평균 5.4만원이었으며, 59.6%가 전문성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표Ⅳ-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지원 - 1

	실시여부		연평균 실시시간	연평균 개인부담 교육비	교육도움정도			
	실시	미실시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도움 됨	많이 도움 됨
기관자체 제공교육	60.2	39.8	23.3	40.5	1.2	6.1	68.0	24.7
협회제공 교육	43.0	57.0	9.2	7.4	.9	11.1	66.8	21.2
전라북도 주관 교육	18.2	81.8	5.7	3.2	4.3	11.8	63.4	20.5
시군 주관 교육	21.8	78.2	5.7	5.5	3.3	12.5	62.0	22.3
의무 보수교육	71.8	28.2	8.4	5.4	3.8	16.3	59.6	20.3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기본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44.4%였고, 연평균 10.6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며 기본직무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6%로 많았으나 관련교육은 조금 제공되고 있는 편이 58.3%로 높았음

〈표Ⅳ-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지원 - 2

	교육여부		연평균 교육시 간	교육의 중요도				교육제공 정도			
	받음	받으 지 않음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조금 필요함	많이 필요함	전혀 제공안 됨	제공 안됨	조금 제공됨	많이 제공됨
회계노무 교육	23.9	76.1	5.3	2.3	5.7	37.2	54.8	15.6	16.4	50.4	17.6
기본직무 교육	44.4	55.6	10.6	1.4	1.4	42.3	54.6	4.9	13.2	58.3	23.6
상담기술 교육	25.0	75.0	6.0	.7	2.6	37.2	59.5	14.4	17.0	50.9	17.7
정보화 교육	18.7	81.3	4.9	2.1	3.7	53.9	40.3	18.1	21.0	44.1	16.8

〈표Ⅳ-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 1

구분		교육진행 시간	교육수강 방법	교육장소 및 공간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비 부담	자유로운 교육참여 환경조성	
시설 형태	이용시설	5.1	13.4	5.9	52.6	7.5	10.7	4.7	
	생활시설	11.0	13.4	12.6	44.9	4.6	8.8	4.8	
시설 유형	아동복지시설	9.1	19.9	12.6	42.4	2.2	9.1	4.8	
	노인복지시설	5.7	9.8	7.4	52.5	11.5	9.0	4.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	.0	9.1	50.0	4.5	22.7	13.6	
	장애인복지시설	10.3	11.8	10.6	46.0	6.1	10.3	4.9	
	정신보건시설	4.5	9.0	16.4	53.7	7.5	6.0	3.0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0	.0	.0	50.0	.0	.0	50.0	
	지역복지시설	4.3	8.7	.0	78.3	4.3	4.3	.0	
	기타	.0	.0	.0	33.3	.0	33.3	33.3	
직책	생활 시설	관리직	4.6	13.8	6.2	52.3	7.7	10.8	4.6
		일반직	11.8	13.7	13.1	44.8	3.8	8.6	4.3
	이용 시설	관리직	2.9	11.6	11.6	55.1	7.2	7.2	4.3
		일반직	5.4	9.0	7.2	59.5	7.2	7.2	4.5
전체		9.0	13.4	10.3	47.5	5.6	9.4	4.8	

〈표Ⅳ-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 2

구분		교육진행 시간	교육수강 방법	교육장소 및 공간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비 부담	자유로운 교육참여 환경조성	
시설 형태	이용시설	2.4	3.3	6.9	17.1	19.1	18.7	32.5	
	생활시설	3.3	3.7	4.3	22.6	15.3	23.0	27.9	
시설 유형	아동복지시설	3.9	3.5	4.4	24.0	12.2	27.9	24.0	
	노인복지시설	4.3	2.6	6.0	15.4	23.1	15.4	33.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	.0	9.1	9.1	18.2	27.3	36.4	
	장애인복지시설	.8	3.9	7.1	19.6	16.9	20.8	31.0	
	정신보건시설	4.5	3.0	1.5	24.2	19.7	12.1	34.8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0	.0	.0	50.0	.0	50.0	.0	
	지역복지시설	4.3	4.3	.0	13.0	26.1	26.1	26.1	
	기타	.0	.0	.0	33.3	.0	33.3	33.3	
직책	생활 시설	관리직	7.9	6.3	7.9	17.5	20.6	20.6	19.0
		일반직	1.9	2.7	4.1	23.9	15.5	22.8	29.1
	이용 시설	관리직	4.5	4.5	6.0	16.4	17.9	28.4	22.4
		일반직	.0	3.7	6.5	14.8	25.0	16.7	33.3
전체		3.0	3.5	5.2	20.8	16.6	21.6	29.4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첫 번째로 교육의 내용 개선이 47.5%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교육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이 29.4%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제5장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1. 기본급의 단계적 상향조정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직급 단일화
3.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원
4. 각종 수당 통합
5.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6.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실 운영





## 제 5 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 1. 기본급의 단계적 상향조정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을 2017년까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로 지원
- 기본급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당의 폐지 혹은 기본급여로의 산입 검토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2018년 100%에 맞출 계획이었지만 2015년 도 방침 결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2014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향후 2017년까지 100% 준수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직급 단일화

- 복지부의 경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분류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의 경우도 사회, 노인 이용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을 구분하여 급여기준표를 제시
  - 단일급여 적용으로 기존 급여기준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경우 차액부분을 보전지급 가능(국장이 부장으로 조정될 경우 감소된 차액부분 급여에서 보전지급)

〈표V-1〉 사회복지종사자 직급 표준화

1급	관장			
2급	관장	부장		
3급	관장	부장	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표V-2〉 직급기준 통일방안 (단위 : 천원, 월)

통일직급 구분	생활시설	이용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장애인)
1급	원장	관장	관장
2급	사무국장	부장	1급, 사무국장
3급	과장/사회복지사	과장	2급
4급	선임생활지도원	선임사회복지사	3급
5급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4급

### 3.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원

- 복지시설 인건비 지원을 운영비와 통합해서 지원하지 않고, 인건비는 별도로 분리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의 안정적 지원
-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우선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효과 극대화 필요

#### 4. 각종 수당 통합

- 복지시설 종사자의 각종수당을 통합하여 호봉제로 지급하여 시설간 종사자 처우 수준 편차 보정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총 9개 수당 지급, 이중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합하여 연봉으로 지급

〈표 V-3〉 세부시설 유형별 지급수당

(단위 : 천원/년)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기타수당
이동양육시설	1,673	652	X	1,173	2,077	450	1,212	5,479	1,490
모자보호시설	X	692	X	X	2,136	X	X	3,407	1,592
장애거주시설	1,016	720	X	X	1,817	X	1,716	5,362	2,074
장애인복지관	X	685	X	565	2,059	791	X	X	1,7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X	657	X	X	1,874	1,720	1,145	368	1,12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X	490	X	X	1,660	1,620	X	X	315
장애인심부름센터	X	664	X	X	1,864	1,728	X	X	1,246
장애인수화통역센터	600	534	X	X	1,585	1,564	1,530	X	884
사회복지시설	3,600	678	1,998	X	X	X	1,308	3,172	2,108
점자도서관	X	X	X	X	2,174	X	X	X	2,127
노숙인자활시설	X	800	X	X	2,838	X	X	5,487	X

〈표 V-4〉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통합(안)

구 분	현 행		개선(2018년시행)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본급	기본급(본봉)	기본급(본봉)	연 봉
수 당	기말수당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수당 기말수당	기말수당 가계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직책수당	
	교통비 급식비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계	기본급 + 12개수당	기본급 + 12개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연장근무수당 연봉 + 3개수당

## 5.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육내용 개선(47.5%)이 높게 나타나 현재 보수교육의 교육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의 욕구수준에 맞게 재구성
-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급별, 근무연차별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교육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지원가능하도록 권고

## 6.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실 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실을 별도의 민간단체에 설치하거나 새롭게 수립된 인권계획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 장치 마련
- 전라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관련 전달체계 반영

*Jthink* 2015-OR-03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

발행인 | 강현직

발행일 | 2015년 12월 1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136-6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